

한-EU FTA 협상에서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논의와 경제적 효과

- A Review on the discussion of the duty drawback system in Korea-EU FTA negotiations -

박현희(Hyun-Hee Park)

세계농정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 | | |
|-----------------------|------------|
| I. 서론 | V. 요약 및 결론 |
| II. 한-EU FTA 협상 | 참고문헌 |
| III. 한-EU FTA에서의 관세환급 | Abstract |
| IV.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 | |

Abstract

Duty refund taken exports of raw materials in the manufacture of goods for import duties paid, and refunds, as a system, enhance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exporters to promote exports is established for them. The duty drawback system is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export goods levied on imported inputs does not exceed the level of reimbursement is established within the WTO rules do not restrict the export support policy is one of.

Korea-EU FTA negotiations is a drawback in the ongoing maintenance of claims, while the EU claims that the duty drawback system can not be negotiated until the end of the field of focus is discussed. Intermediate goods imports to Korea is a higher percentage was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duty drawback, EU FTA, the duty drawback is not a party to remain exporters of raw materials, such as 3rd party can not go back because the benefits were opposed to. The final one-EU Concessions for the current duty drawback system was to maintain continuous.

Key Words : Duty drawback, Korea-EU FTA, Export Demand Function, Export Supply Function

I. 서론

최근의 세계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주의와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는 GATT 체제에서보다 WTO 체제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 짙다.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서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기존 수출시장유지와 새로운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FTA정책은 초기에는 작은 나라들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해 오다가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도 이러한 배경 하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EU는 27개회원국으로 구성된 거대 경제권으로서 EU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EU는 세계 제1의 경제권이며 우리의 제2대 수출국으로서 EU와의 교역을 확대 할 수 기회의 장이기도 한다.

한-EU FTA 협상에서 가장 큰 난항을 겪었던 분야는 관세환급제도와 원산지비중의 문제였는데 관세환급은 WTO 체제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지원 수단이 대폭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수입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준을 초과한 수준에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출보조금에서 제외되어 질 수 있어 WTO체제하에서 효용성이 큰 수출지원 수단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관세환급이라 함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 주어 국내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한 제도이다. 관세환급은 EU 측의 수용불가 입장으로 한-EU FTA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협상의 쟁점사항으로 남았던 분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EU FTA 협상에서 관세환급에 대한 논의동향과 관세환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고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졌다. 먼저 2장에서는 한-EU FTA 협상에 대한 추진배경과 추진경과 및 협상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개념 및 발전과정, 운영현황에 대하여 정리를 한 후 한-EU FTA 협상에서 쟁점사항이었던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과 EU측의 입장 및 협상타결내용을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한-EU FTA 협상에서 논의된 관세환급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관세환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위한 분석모형의 설정 및 분석결과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요약 및 정리를 하였다.

II. 한-EU FTA 협상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 FTA)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이 2007년 5월 개최됨으로써 한-EU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권으로서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 한-EU FTA가 체결되는 경우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¹⁾에 의하면 제조업 100%, 농업·서비스업 50% 개방 시 GDP 24조원(3.08%) 증가와 신규고용 59만명 창출효과가 발생하고 수출은 110억불, 무역수지 흑자는 28.5억불 증가하며 농산물 분야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되어졌다.

본 절에서는 한-EU FTA 협상추진 배경과 경과 및 협상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협상추진 배경

한-EU FTA 협상에 대한 한국 측과 EU측의 입장은 달랐다. 한국은 제2의 수출시장으로서 EU 경제권이 필요했고, 거대경제권과 FTA 추진정책으로 미국시장에 이어 EU 시장과의 FTA 협상에 임했으나 EU는 WTO/DDA 우선정책에 따라 제3국과의 FTA 추진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DDA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한-미 FTA 협상 출범에 자극을 받아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는데, 한-EU FTA 협상에서 한국측과 EU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입장

최근의 세계경제 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체제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 짙다.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서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기존 수출시장의 유지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입장이다.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EU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연구”, 2005.12.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3년 8월에 발표한 “FTA 추진 로드맵”에서는 칠레, 싱가포르, EFTA 등 작은 나라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중국, EU 등의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서 출발하며, 한국이 동북아에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한 축인 EU와의 FTA 체결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1957년 6개 국가로 출범한 이후 관세동맹(1968년) → 공동시장(1993년) → 경제연합(1995) → 경제통화동맹(1999년) 등으로 심화되었으며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 EU는 1963년 7월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1996년 10월 ‘무역 및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을 체결하고 상호 무역증대와 경제협력 확대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EU는 2005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음을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05년 대EU 수출은 437억 달러로 세계수출시장에서의 점유비가 15.4%이며, 대미국 수출은 413억 달러로 14.5%를 달성하며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2의 수출시장으로 등장하였다. 2009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은 466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3%이며, 대미 수출은 377억 달러와 11.0%로 점유율 측면에서 2.8%point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한국의 주요 5국에 대한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세계		중국		EU		ASEAN		미국		일본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1995	125,058	100.0	9,144	7.3	16,301	13.0	17,979	14.4	24,131	19.3	17,049	13.6
1996	129,715	100.0	11,377	8.8	15,325	11.8	20,311	15.7	21,670	16.7	15,767	12.2
1997	136,164	100.0	13,572	10.0	16,864	12.4	20,365	15.0	21,625	15.9	14,771	10.8
1998	132,313	100.0	11,944	9.0	18,171	13.7	15,328	11.6	22,805	17.2	12,238	9.2
1999	143,685	100.0	13,685	9.5	20,241	14.1	17,708	12.3	29,475	20.5	15,862	11.0
2000	172,268	100.0	18,455	10.7	23,424	13.6	20,134	11.7	37,611	21.8	20,466	11.9
2001	150,439	100.0	18,190	12.1	19,627	13.0	16,459	10.9	31,211	20.7	16,506	11.0
2002	162,471	100.0	23,754	14.6	21,694	13.4	18,400	11.3	32,780	20.2	15,143	9.3
2003	193,817	100.0	35,110	18.1	24,887	12.8	20,253	10.4	34,219	17.7	17,276	8.9

	세계		중국		EU		ASEAN		미국		일본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2004	253,845	100.0	49,763	19.6	37,830	14.9	24,024	9.5	42,849	16.9	21,701	8.5
2005	284,419	100.0	61,915	21.8	43,659	15.4	27,432	9.6	41,343	14.5	24,027	8.4
2006	325,465	100.0	69,459	21.3	48,450	14.9	32,066	9.9	43,184	13.3	26,534	8.2
2007	371,489	100.0	81,985	22.1	55,982	15.1	38,749	10.4	45,766	12.3	26,370	7.1
2008	422,007	100.0	91,389	21.7	58,375	13.8	49,283	11.7	46,377	11.0	28,252	6.7
2009	363,534	100.0	86,703	23.9	46,608	12.8	40,979	11.3	37,650	10.4	21,771	6.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EU에 대한 수출은 2003년 249억 달러에서 2004년 378억 달러로 51% 증가한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의 수입수요 증대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한국의 주요 5국에 대한 수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세계		중국		일본		ASEAN		EU		미국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1995	135,119	100.0	7,401	5.5	32,606	24.1	10,137	7.5	18,191	13.5	30,404	22.5
1996	150,339	100.0	8,539	5.7	31,449	20.9	12,074	8.0	21,204	14.1	33,305	22.2
1997	144,616	100.0	10,117	7.0	27,907	19.3	12,549	8.7	18,983	13.1	30,122	20.8
1998	93,282	100.0	6,484	7.0	16,840	18.1	9,135	9.8	10,928	11.7	20,403	21.9
1999	119,752	100.0	8,867	7.4	24,142	20.2	12,249	10.2	12,629	10.5	24,922	20.8
2000	160,481	100.0	12,799	8.0	31,828	19.8	18,173	11.3	15,788	9.8	29,242	18.2
2001	141,098	100.0	13,303	9.4	26,633	18.9	15,916	11.3	14,921	10.6	22,376	15.9
2002	152,126	100.0	17,400	11.4	29,856	19.6	16,757	11.0	17,107	11.2	23,009	15.1
2003	178,827	100.0	21,909	12.3	36,313	20.3	18,458	10.3	19,383	10.8	24,814	13.9
2004	224,463	100.0	29,585	13.2	46,144	20.6	22,383	10.0	24,187	10.8	28,783	12.8
2005	261,238	100.0	38,648	14.8	48,403	18.5	26,064	10.0	27,296	10.4	30,586	11.7
2006	309,383	100.0	48,557	15.7	51,926	16.8	29,743	9.6	30,061	9.7	33,654	10.9
2007	356,846	100.0	63,028	17.7	56,250	15.8	33,110	9.3	36,824	10.3	37,219	10.4
2008	435,275	100.0	76,930	17.7	60,956	14.0	40,917	9.4	39,981	9.2	38,365	8.8
2009	323,085	100.0	54,246	16.8	49,428	15.3	34,053	10.5	32,232	10.0	29,039	9.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표 2>는 한국의 EU 및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현황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1995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시장국은 일본, 미국, EU의 순이었으나 중국시장의 급부상으로 인하여 2009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시장국은 중국, 일본, ASEAN, EU, 미국의 순이다. 한국의 EU로 부터의 수입을 보게 되면 1995년 182억 달러 이던 것이 2008년에는 400억 달러로 불과 10여년 사이 2배 이상 증가를 하였으며, 2009년도 수입은 322억 달러이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이다.

<표 3> 5대 국가와의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불)

국가	수출				국가	수입			
	1995	2000	2005	2009		1995	2000	2005	2009
중 국	9,144	18,455	61,915	86,703	중 국	7,401	12,799	38,648	54,246
E U	16,301	23,424	43,659	46,608	일 본	32,606	31,828	48,403	49,428
ASEAN	17,979	20,134	27,432	40,979	ASEAN	10,137	18,173	26,064	34,053
미 국	24,131	37,611	41,343	37,650	E U	18,191	15,788	27,296	32,232
일 본	17,049	20,466	24,027	21,771	미 국	30,404	29,242	30,586	29,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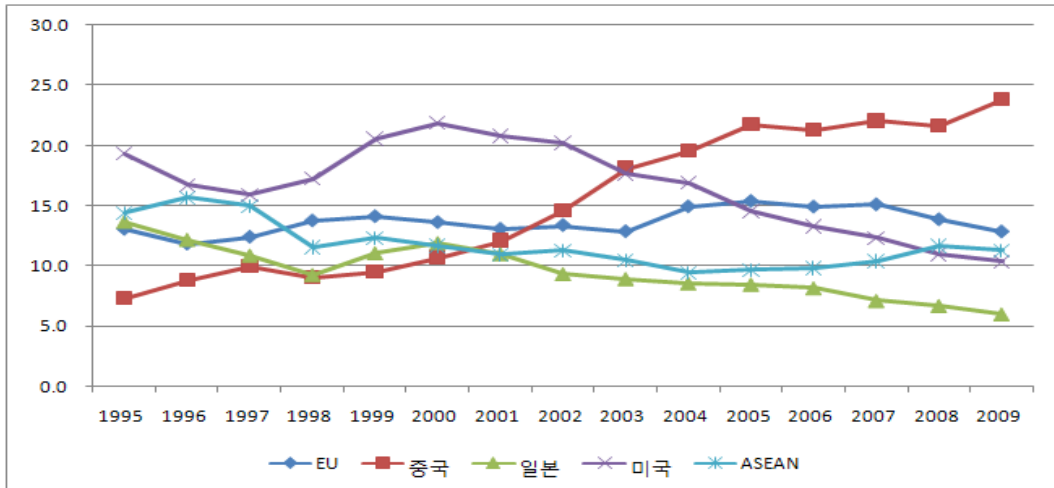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표 3>에는 우리나라와 주요 5대 교역국가와의 수출입 현황이 정리되어졌으며, 수출의 경우 1995년에는 미국, 아세안, 일본에 이어 EU는 4위의 수출시장이었으나 중국시장의 등장과 함께 EU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EU 시장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의 수출시장으로 부상을 하였다.

수입의 경우에는 1995년 일본, 미국에 이어 EU는 3위의 수입시장이었으나 역시 중국시장의 등장으로 한국의 제1의 수입시장은 중국이며, 일본, 아세안에 이어 4위의 수입시장이다. 특징적인 것은 한국에 있어 수출시장 수입시장 모두 미국보다 EU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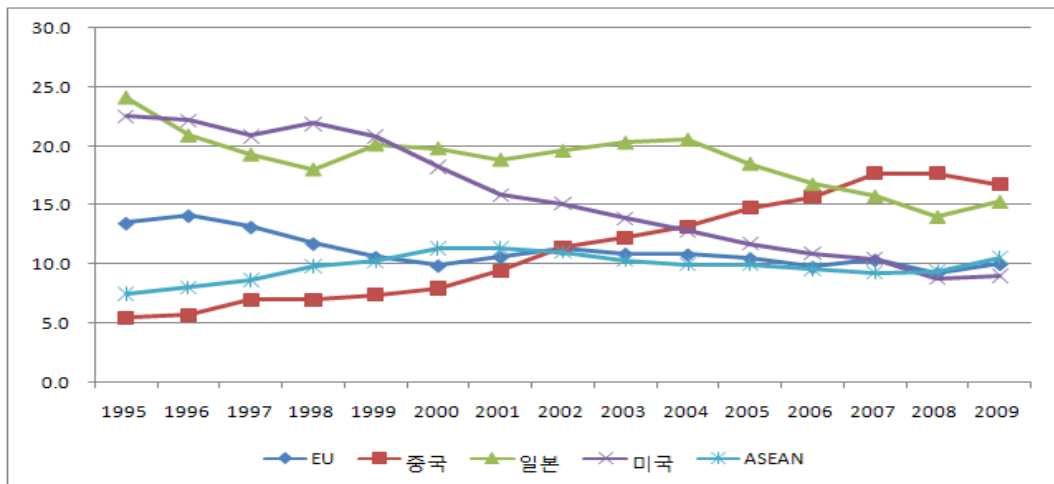
<그림 1>과 <그림 2>는 주요 5대 교역 국가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과 수입시장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EU 시장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등장하면서 EU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5대 국가의 수출점유비 추이



자료 : 저자작성

<그림 2> 5대 국가의 수입점유비 추이



자료 : 저자작성

2) EU의 입장

EU의 기본적인 통상정책 방향은 새로운 세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시장을 개방하고 유럽산 상품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EU의 FTA 정책은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 CCP)²⁾의 큰 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FTA 정책은 EU 공동통상정책의 주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이다. 당시 EU의 통상정책은 다자주의를 우선시 하여 WTO/DDA 우선정책에 따라 제3국과의 FTA 추진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었다. 그러나 DDA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 출범에 자극을 받아 한-EU FTA 협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EU 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아시아시장에서 한국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EU는 한국시장을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지니면서 연평균 4~5% 성장하는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을 향후 20년간 6위의 시장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 보고 있다.³⁾

양자간 협상보다는 다자간 협상을 우선시 했던 EU가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원인을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⁴⁾

내부적 원인으로는 EU의 통상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 Global Europe 전략을 공표함으로써 그동안 견지해 오던 유럽중심의 통상정책의 변화를 꾀하였다.⁵⁾ 그동안 EU는 FTA 상대국을 근접국이나 구식민지 국가로 한정하고 그 외의 국가와는 다자간 차원에서 협상한다는 원칙을 고수 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통상전략에서는 FTA를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포괄적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원거리 국가와도 FTA를 체결하는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이다. EU는 이러한 FTA의 첫 번째 대상국으로 한국, 인도, 아세안을 선정하게 되었다.

외부적 원인으로는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미 FTA의 파급효과를 들 수 있다. 미국이 한국과 성공적으로 FTA 협상을 마무리 짓자, 동아시아 시장에서 미국과 경쟁관계를 갖던 EU로서는 동아시아의 통상국가인 한국과의 FTA를 체결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진 것이다. 또한 한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상당한 구매력을 갖추고 주요국들과의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간 점도 EU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로 평가해 볼 수 있다.

2)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 CCP)은 EU가 1968년 7월 1일자로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결성하고 실시한 공동의 통상정책으로서 일반 적용 역영으로는 공동관세정책, 수출제도, 수입제도 및 통상방어제도 등이며, GATT 및 WTO 협정 등 다자협정 및 양자협정 등과도 관련되어 있다.

3) 김득갑,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7.5.15., p.17.

4) 강유덕, “한-EU FTA의 협상결과 및 향후전망”, 『관세와 무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9.8. p.49.

5) European Commission,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A Contribution to the EU's Growth and Jobs Strategy”,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s, Brussels, SEC 1230, October 4, 2006.

2. 협상추진 경과

한국과 EU는 2006년 7월 및 9월에 2차례에 걸친 예비협의를 통해 양국 간 FTA가 상호 이익이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정부가 FTA 협상 출범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2007년 5월 6일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한-EU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한-EU 양측은 WTO 규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기로 하며 2007년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제1차 한-EU FTA협상을 진행하였다.

제1차 한-EU FTA 협상에서 한-EU 양측은 상품양허 초안을 6월말까지 교환하고 공산품의 경우 10년 내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포함하여 전체 95% 이상의 관세철폐 원칙에 합의하는 등 양허협상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제2차 협상은 2007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브뤼셀에서 진행되었으며, 우리 측에서 제시한 상품양허 초안에 대하여 EU측은 실망을 표시하고 우리에게 보다 진전된 양허안을 제시하도록 압박하였다.

제3차 협상은 2008년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브뤼셀에서 진행되었으며, 우리 측이 상품양허 수정안과 관련하여 “Request & Offer” 방식으로 협상모드를 변경하는 제안에 대하여 EU측은 거부하였다. 자동차, 전기전자, 의약품 등 비관세장벽에 관해서는 EU측이 제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하였고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측 개방안에 대하여 명료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제4차 협상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상품양허 관련 기술 협의를 하였고, 개별품목에 관한 민감성 및 개선가능성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측에서는 산업별 민감성을 설명하고 EU측에 대해서도 자동차, 철강 등 우리측 관심품목의 양허개선을 요구하였으나 EU측이 강조한 자동차 비관세(표준)문제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협상은 종결되었다.

제5차 협상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브뤼셀에서 진행되었으며 상품양허분야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안을 통해 EU측의 세부품목별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이 협상은 자동차의 표준문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EU측은 한-미 FTA에 기초한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명확하게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제6차 협상은 2008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과 EU간의 견해가 큰 상품양허 및 자동차 표준 분야는 공식 분과협상을 개최하지 않고, 경제, 분쟁해결,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 일부분과 협상이 타결되는 성과를 얻었다.

제7차 협상은 2008년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브뤼셀에서 진행되었으며 양측의 견해차가 큰 상품양허 및 자동차 표준 분야는 공식 분과협상을 개최하지 않고, 자동차 표준을 제외한 비관세, 원산지, SPS,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협상이 진전되었다.

제8차 협상은 2009년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한-EU FTA 협상의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하여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EU측은 관세환급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취하였고, 우리 측은 관세환급의 금지가 FTA 체결에 따른 관세감축 효과를 크게 축소시킨다는 점을 들어 관세환급제도의 유지를 주장하였다.

한-EU FTA 협상의 최종타결은 2009년 7월 13일 개최된 협상에서 이루어 졌으며 한-EU FTA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시기에 교역과 성장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여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호주의 무역을 반대하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며 최종합의안을 마련하고 협상 최종 타결을 선언하였다.

2009년 10월 15일 한-EU FTA에 대한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 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으며 2010년 중으로 한-EU FTA를 발효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5월 10일 한-EU 기본협정에 정식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교역 2위, 투자 1위로 부상한 EU와 새로운 발전방향 및 비전 제시와 함께 경제 분야에 대한 협력뿐만 아니라 정무, 내무, 사법 분야 등으로까지 협력범위를 확대시켰고, 한-EU FTA와 함께 양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3. 한-EU FTA협상의 의의

우리나라와 EU와의 FTA의 의의는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확고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EU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의 선진 경제권으로서 한-EU FTA는 우리 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시켜 우리 경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EU FTA는 세계 제1의 경제권, 우리의 제2대 교역상대국이자 제1의 투자국인 EU와의 교역확대를 가져올 것이고 EU의 평균관세율은 미국보다 높고 특히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이 높아서 FTA가 체결되게 되면 우리기업에게 상당한 정도의 가시적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EU의 평균실행관세율은 4.2% 수준으로 미국의 평균실행관세율인 3.7%보다 높고,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 중의 하나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0%로 미국의 2.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⁶⁾ 또한 GDP 규모는 2009년 16조 4,000억 달러(세계 GDP의 28.4%를 차지), 총교역액은 788억 달러로 2009년 미국의 GDP 규모 14조 2,463억 달러, 총교역액 667억 달러에 비해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100%, 농업 및 서비스의 경우 50% 시장개방을 조건으로 분석한 결과 한-EU FTA 체결에 따라 GDP는 16~24조원(2.202~3.08%) 증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⁷⁾ 한-EU FTA는 한국경제에 수출확대, 경제구조의 선진화,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 및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전망이다.

III. 한-EU FTA에서의 관세환급

WTO 체제 이후 새로운 규범 하에서는 세제·금융 등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지원 수단은 축소·폐지되는 등 대폭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관세환급제도는 허용되고 있는 수출지원 수단으로써 유용한 수출지원정책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세환급제도가 한-EU FTA 협상에서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개념 및 발전과정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한-EU FTA 협상에서 끝까지 쟁점사항이 되었던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한국 측의 주장과 EU측의 주장 및 협상타결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관세환급제도의 고찰

1) 관세환급제도의 개념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에 납부했던 관세를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1975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내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수출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 제도이다.

6) 외교통상부, “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보도자료(2007.5.6.)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EU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연구”, 2005.12.

이 제도는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 주는 것으로서 국내 수출기업이 생산비용 면에서 수출경쟁국의 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수출지원정책이며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관세장벽을 수출의 경우에는 제거하여 우리나라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WTO 체제의 특징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규제 강화를 들 수 있는데, WTO 규정에 의하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방식은 축소되는 반면 간접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제재가 약하다.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르면 제1조 제1항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there is 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협정 제3조 제1항에는 농업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보조금의 유형을 규정하면서 부속서 I에 제시된 보조금 예시목록에 나열된 것을 금지보조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보조금협정 부속서 I에는 열두가지 유형의 금지되는 수출보조금이 예시되어 있으며 이중 i) 항목에는 수출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수입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준을 초과한 수입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급이 금지보조금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수출에 공하여지는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였던 관세를 환급하는데 있어 수출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수입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준을 초과해서 환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세환급은 WTO 규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지원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관세환급제도의 발전과정

수출용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상의 수출지원방법은 ‘사전면세제도’와 ‘환급제도’가 있는데, 사전면세제도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수출을 조건으로 1년 동안 조건부로 관세를 면세조치하고, 1년 이내에 수출을 하지 못할 경우 관세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사전면세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를 사전에 면제해 줌으로써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1960년대 및 1970년대 관세환급제도가 실시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사전면세제도는 1960년대까지 교역규모가 작고 단순가공무역의 단계에 있는 국내산업의 수출증대에는 크게 기여 하였으나,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전면세제도는 외화가득율의 저하, 국내산업의 잠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되어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에 제기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환급제도는 1974년 11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입법되고 1975년 7월 1일부터 관세환급제도가 실시되었다. 관세환급제도는 원

재료를 수입할 때 일단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그 원재료를 수입할 당시에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품에 대한 관세부담을 제거해 줌으로써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주기위한 제도이며 한편으로는 관세를 사후에 환급 받음으로서 금융비용 등 제반비용 등이 발생하여 수출자에게는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사전 면세제도와 달리 면세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의 수출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복잡한 사후관리 절차가 필요 없어 세관행정업무를 대폭 감축시키는 효과도 있다.

관세환급제도는 관세환급특례법이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개별환급제도와 정액환급제도가 병행 운영되고 있고, 1997년부터는 자율소요량제도가 도입되어 소요량 관리를 관세당국이 아니라 기업에서 직접 하도록 되었다. 또한 1997년 7월 1일부터는 관세환급업무를 전산화하여 1998년 7월부터는 서류 없는(paperless) 환급을 실시하여 환급절차의 간소화를 기하였다.

3) 관세환급제도의 운영현황

우리나라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11.2%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농업은 41.6%, 섬유의류산업은 10.1%, 자동차 8.0% 등으로 수입시 부담하게 될 관세는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출용 원재료에 납부했던 관세에 대해서는 수출의 이행과 함께 수출업자에게 환급해 줌으로써 수출자의 가격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또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된다.

관세수입대비 관세환급액의 비중을 보게 되면 2000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는 2.04%, 우리나라는 37.6%이고, 2002년에는 미국은 2.09%, 우리나라는 32.9%로 전체관세수입에서 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⁸⁾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산업 구조가 가공무역의 구조를 띠고 있어 수출용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여 가공후 재수출하는 무역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액과 관세환급액을 비교하였고 수출통관액에서 관세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통관액에서 관세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64%, 1991년 2.07%를 보이다가 1992년부터는 1%대를 유지해 왔다.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시 0.97%로 1%대 이하로 감소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으며 2008년에는 0.51%를 보여 주고 있다. 수출통관액과 관세환급액간의 상관관계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수

8) 송선옥, “미국환세환급제도와 개정교도협약 환급관련규정의 고찰을 통한 한국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 무역학회지 제30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5.6. p.221.

출통관액에서 관세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관세환급이 수출가격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액 대비 관세환급액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관세환급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과 무역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평균관세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 관세환급액의 점유비

(단위 : 백만 불, %)

연도	관세환급액(A)	수출액(B)	A/B
1990	1,718.84	65,015.73	2.64
1991	1,489.72	71,870.12	2.07
1992	1,273.22	76,631.52	1.66
1993	1,205.48	82,235.87	1.47
1994	1,251.96	96,013.24	1.30
1995	1,582.09	125,057.99	1.27
1996	1,783.19	129,715.14	1.37
1997	1,323.96	136,164.20	0.97
1998	967.48	132,313.14	0.73
1999	1,062.55	143,685.46	0.74
2000	1,181.93	172,267.51	0.69
2001	1,135.95	150,439.14	0.76
2002	1,065.37	162,470.53	0.66
2003	1,228.85	193,817.44	0.63
2004	1,744.63	253,844.67	0.69
2005	1,945.94	284,418.74	0.68
2006	2,201.81	325,464.85	0.68
2007	2,293.36	371,489.09	0.62
2008	2,153.60	422,007.33	0.51

주) 관세환급액은 관세환급지급액으로서 매년 증가 평균환율로 환산한 값임.

자료 : 관세청, 『관세연감』 각년호, 관세청, www.customs.or.kr, 주요무역통계.

2. 한-EU FTA에서 관세환급

한-EU FTA 협상에서 가장 큰 난항은 관세환급제도와 원산지비중을 둘러싸고 일어난 EU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반대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큰 회원국들로부터 제기되어졌고 그로 인해 유럽자동차협회(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CEA)는 한국 측이 주장해온 관세환급제도와 원산지비중 규정 등의 협상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1) 한국측의 주장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을 위해서 중간재를 수입할 때 지불하게 되는 수입관세를 수출할 때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많은 중간재와 부품들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교역액의 60% 이상이 역내교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낮아 중간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비해 관세환급의 필요성이 없으나 우리나라는 EU와는 입장이 달랐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FTA 협상에서 관세환급을 허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협상 초기부터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 왔다.

우리나라는 관세환급제도는 국내법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EU와의 협상에 맞추어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와 달리 주로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관세환급이 금지될 경우 생산비 증가의 부담이 커질 것이고 유럽시장에서 우리의 경쟁 상대인 일본, 중국이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환급을 철폐할 경우 FTA 체결로 인한 우리 측의 관세철폐효과가 감소된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관세환급제도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2) EU측의 주장

관세환급제도가 중간재에 대한 수입비율이 높은 한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는 사실을 EU측도 인식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EU가 칠레, 멕시코, 남아공 등과 체결한 FTA에서 관세환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관세환급 불가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EU는 관세환급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허용하더라도 단기간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EU-멕시코 FTA에서는 2년간 허용, EU-칠레 FTA

에서는 4년간 허용, EU-남아공 FTA에서는 관세환급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한국은 역외가공과 관세환급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U는 관세환급을 유지할 경우 FTA 체결 당사자가 아닌 원재료 수출국 등의 제3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와 함께 원자재의 관세환급은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와 맞물려 이중혜택의 우려가 있다며 강력하게 관세환급 폐지를 요구하였다.

〈표 5〉 주요 무역협정에서의 관세환급 규정

	PANEURO	EU-남아공	EU-멕시코	EU-칠레	NAFTA	한-칠레
관세환급 규정	불허	언급 없음	2년 후 불허	4년 후 불허	7년 후 불허	언급 없음

자료 : UNCTAD,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 The New Interface', 2005./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7.5.15. p.56에서 재인용.

3) 협상타결 내용

관세환급은 역외 국가에서 부품 등 원재료를 가져와 가공 후 재수출할 때 부품 수입시 냈던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인데 한국과 EU와의 FTA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분야이다.

협상타결 내용에 의하면 관세환급제도는 현행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협정 발효후 5년 후부터 특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조치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 관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한-EU FTA 협정에서 합의된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의 기본 원칙은 상대국 동종제품과의 경쟁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sourcing pattern)의 변화가 입증될 경우 발동 가능하다. 예를 들면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최종재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대세계 수입증가율(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국한)이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증가율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역외산 원자재의 수입증가가 국내 소비 증가 등 상대국 수출용도 이외의 수요에 기인한 경우, 상기 증가율의 경감요인으로 고려하고, 상대국

9) 외교통상부,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09.10. p.91.

동중제품과의 경쟁 조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

관세환급제도 검토 결과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일방 당사국이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제한을 위한 협의(consultation)를 요청할 수 있고, 발동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양측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한-EU FTA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패널에서는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품목에 대해 환급되는 관세를 5%로 제한(예컨대 현재 실행관세율이 8%인 품목의 경우 5%만 환급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한-EU FTA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환급제도에 관해 공동으로 검토(Review)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한-미 FTA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였고, 원산지 의정서 및 동 부속서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EU 양측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구성하고 역외가공지역(OPZ)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하며, 역외가공지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일정 요건 하에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 관세를 부여받으며, 개성공단 이외의 다른 지역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합의 하였다.

IV.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

1. 선행연구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제도의 개선이나 운영현황, 법·제도 해설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었고, 관세환급이 수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수출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았다.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경제적 평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던 이유는 관세환급제도는 개발도상국들에서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으로서 도입하였던 제도이고,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은 대부분 원재료에 대하여는 저율의 관세나 무관세인 관계로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관세환급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 장근호·김진수(1997)의 연구가 있는데 부분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제도가 수출증대 및 원료의 국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관세환급제도를 포함한 관세지원제도는 수출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지원제도가 수입원료에 부과된 관세로 인한 생산비용 인상을 역제할 뿐만 아니라 국내소비에 대하여 소비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원재료 국산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분석결과가 매우 회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산화비율이 낮은 원재료산업에서는 국산원료의 생산증대는 이미 이에 대한 관세부과로 달성되었고 수출용 수입원료에 대하여만 관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¹⁰⁾

정재호·이명현(2002)은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제도가 수출과 국산화 촉진에 미치는 영향 및 관세인하와 함께 관세환급제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부분균형분석결과 관세환급을 통한 국산화는 환급에 따른 제반비용의 발생으로 국산화 촉진 이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균형분석에서는 관세환급의 폐지와 관세율의 인하가 병행되는 정책변화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현 상태의 세수입을 유지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고 환급제도도 폐지할 경우 후생의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¹¹⁾

정재완(2007)은 1986년 1/4분기에서 1997년 1/4분기까지 12년간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관세환급제도의 수출지원효과를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한 결과 관세환급제도가 수출을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환급이 수출에 부(-)의 효과를 준 이유를 ‘환급비용’의 존재로 보았다.¹²⁾

최해범(2007)은 수출지원제도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관세환급제도와 국내후생과의 관계를 통해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지원에 기여한다고 보았으나 원재료 국산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¹³⁾

Mah(2007)의 연구에서는 관세환급제도가 한국의 수출촉진에 기여했는지에 대하여 수출공급함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1975년부터 2001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종속변수로는 수출량지수를 독립변수로는 수출상대가격지수, 수출보조금변수로 관세환급액을 생산자가격지수로 나눈 값, 국내수요압력변수로 실질경제성장율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상대가격과 국내수요압력은 수출공급에 유의적이지 못하였으나 관세환급의

10) 장근호·김진수,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11.

11) 정재호·이명현,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12.

12) 정재완,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의 경제적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6.

13) 최해범,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8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7.12., pp.23-39.

수출보조금변수는 1% 유의수준에서 수출공급을 설명하는데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관세환급의 10% 증가는 1.2~2.1%의 수출공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¹⁴⁾

2. 분석모형의 설정

수출수요는 우리나라의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수출가격과 외국의 국내가격을 비교하여 외국에서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또한 외국의 소득 변화에 따라 우리의 수출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수요가 결정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출수요는 수출수요함수와 수출가격함수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업체들이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 받는 관세환급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간 자료를 대상으로 수출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출량의 변화의 정도 즉, 탄력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수출수요함수와 수출가격함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을 1990년부터 설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시장평균환율제도로 바뀐 시점이 1990년 3월부터인 관계로 분석대상의 시작을 1990년부터로 하였다.

수출수요함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탄력성접근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출량의 변화를 도출하는 것으로서 각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그 재화의 가격에 의존한다고 보고 가격의 변화가 수출량의 변화에 대한 방향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측정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한 수요는 교역상대국의 소득, 우리나라의 수출가격지수와 교역상대국의 물가지수의 비율로서 나타낸 상대가격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수출수요함수를 설정하였다.

$$EXQ = \alpha_0 + \alpha_1 WGNP + \alpha_2 EXPR + \varepsilon,$$

$$\alpha_1 > 0, \alpha_2 < 0$$

여기에서 EXQ는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을 나타내며, WGNP 세계소득, EXPR은 우리나라의 수출가격지수를 나타낸다. 세계소득을 나타내는 WGNP는 전 세계소득을 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 5개국을 선정하여 각국의 GNP에 우리나라 수출점유

14) Jai S. Mah, "The effect of duty drawback of export promotion : The case of Korea",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18, 2007, pp.967~973.

비에 따른 가중치를 두어 계산된 값을 세계소득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추정계수 α_1 , α_2 는 우리나라 수출상품 수요에 관련된 변수의 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내며 추정계수 α_1 은 교역상대국의 소득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나타낸 것으로서 교역상대국의 소득증가는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므로 정의 부호를 나타낼 것이다. α_2 는 우리나라의 수출물가지수의 변화에 따른 수출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수출물가상승시 수출품에 대한 세계수요는 감소하여 수출물가지수에 대한 계수는 부의 부호를 예상한다.

수출가격함수는 수출가격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수출공급함수로서 수출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입물가지수, 우리나라의 대미환율, 도매물가지수, 관세환급액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수출가격함수식을 설정하였다.

$$\text{EXPR} = \beta_0 + \beta_1\text{IMPR} + \beta_2\text{EXR} + \beta_3\text{WPI} + \beta_4\text{DDS} + v$$

$$\beta_1 > 0, \beta_2 < 0, \beta_3 > 0, \beta_4 < 0$$

여기에서 EXPR은 우리나라의 수출가격지수를 나타내며, IMPR은 수입물가지수, EXR은 우리나라의 대미환율, WPI는 도매물가지수, DDS는 관세환급액을 나타낸다.

추정계수 β_1 , β_2 , β_3 , β_4 는 수출가격과 관련된 변수의 탄력성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서 β_1 은 수입물가지수와 수출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수입물가 상승은 수출제품 원가상승요인이 되어 수입물가와 수출가격은 정의 부호를 예상한다. β_2 는 우리나라 원환의 대미환율과 수출가격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환율의 상승은 외화표시 수출재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부의 부호를 예상한다. β_3 는 우리나라 수출가격과 국내도매물가지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국내물가 상승은 수출품의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의 값을 예상한다. β_4 는 관세환급액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이는 계수로서 관세환급액이 많을수록 수출가격의 하락을 가져 오게 되어 부의 부호를 보일 것을 예상한다.

각 변수들의 변화가 수출가격과 수출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시계열 자료들이 가지는 허구적 회귀(spurious regression)현상에 의한 자료의 불안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Dickey-Fuller의 ADF 검정통계량(augmented dickey-Fuller test statistic)을 이용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요소의 변화율이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통상최소자승추정법(OLS; Ordinary Least Square Method)으로 분석을 하였다.

3. 실증분석 결과

우선 시계열 자료들이 가지는 허구적 회귀 현상에 의한 자료의 불안정성 검증을 위해 ADF 검정법을 사용하여 단위근의 존재요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원자료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한 결과 단위근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각각의 변수에 대한 1, 2차 차분 변수를 이용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 2차 차분한 변수에서 단위근 현상이 사라져서 본 연구에서는 2차 차분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표 6> 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명	원자료	1차차분 자료	2차차분 자료
EXQ	2.0436	-1.3429	-3.8550**
WGNP	1.8877	1.3418	-6.2140***
EXPR	-1.4072	-2.4303	-3.8635**
IMPR	0.5142	-2.8408*	-4.0139***
EXR	-1.7757	-3.3345**	-4.8348***
WPI	0.1750	-2.8217*	-3.6899***
DDS	-1.9873	-3.5827**	-4.2920***

주 : 1) 단위근 검정은 상수항만을 고려하였음
 2)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뜻함

관세환급액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수요함수와 수출가격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7> 및 <표 8>과 같다. 분석대상기간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원자료에 대하여 단위근 현상이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 각각의 시계열자료에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2차 차분한 자료를 이용하여 OLS 추정법으로 분석을 하였다.

<표 7> 수출수요함수 추정결과

변수명	CONSTANT	WGNP	EXPR	R2	D.W.
EXQ	-4.1422 (-13.3425)	2.3050*** (25.7142)	-0.0190 (-0.6175)	0.9873	1.3616

주 : ()의 값은 t 통계량의 값을 의미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뜻함.

<표 7> 은 수출수요함수의 추정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세계소득과 수출물가지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분석한 결과이다. 세계소득과 수출가격 모두 예상한 부호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세계소득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알 수 있었고, 수출가격은 예상한 부호는 보여주고 있지만 유의수준은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가격만의 경쟁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은 수출가격함수의 추정결과이며 우리나라의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입물가지수, 우리나라의 대미환율, 도매물가지수, 관세환급액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분석한 결과이다. 수입물가와 환율 관세환급은 모두 예상한 부호를 보여주고 있으나 도매물가는 반대의 부호를 보여주고 있다. 수입물가의 상승은 수출가격을 인상시키고, 환율인상은 수출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며, 관세환급액도 수출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수입물가와 환율은 각각 10%와 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관세환급액의 증가는 수출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유의성은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8〉 수출가격함수 추정결과

변수명	CONSTANT	IMPR	EXR	WPI	DDS	R2	D.W.
EXPR	5.4070 (5.1751)	1.7178* (1.9467)	-1.4916** (-2.8614)	-1.7490 (-1.6835)	-0.4678 (-1.5577)	0.8630	0.7034

주 : ()의 값은 t 통계량의 값을 의미

*와 **는 각각 10%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뜻함.

V. 요약 및 결론

관세환급(drawback)은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WTO 보조금협정에도 위배되지 않는 보편적인 수출지원제도이며 한-EU FTA 협상에서 한국은 관세환급의 허용을 주장하는 반면 EU는 기본적으로 관세환급의 허용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EU FTA 최종 협상에서는 한-EU FTA 타결의 걸림돌이었던 관세환급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환급제도를 계속 유지하는데 양자간 합의를 하였다. 한-EU 협정 타결문에 의하면 현행 관세환급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특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비율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조치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WTO 체제에서 관세환급은 수출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수입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준을 초과한 수입과징금의 경감이나 환급이 이루어지지만 않으면 금지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 수출지원제도이다. WTO 규정에 의하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방식은 축소되는 반면 간접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제재가 약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수출업자들이 관세환급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환급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한-EU FTA 협상에서도 우리 측이 주장한 대로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이 타결되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업자들이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수출업자들이 환급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관세환급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를 충분히 향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수입관세율이 높은 상태이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관세율은 낮아지고 FTA의 확대로 무관세로 수입되어지는 물품이 많아지면서 관세환급의 필요성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관세환급의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를 고려하여 관세환급제도가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세환급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관세환급액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가격이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관세환급액이 많아질수록 수출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하여 수출가격함수를 분석한 결과 예상한대로 부의 부호는 나왔지만, 유의성은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의적인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관세환급이 수출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으므로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을 증대시키는 지원제도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환급이 수출가격이나 수출량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을 하였으나 분석모형에 수입원자재의 수입관세율의 변화에 따른 관세환급액의 변화와 수출가격, 수출량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면, 완성도 높은 논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나 여러 가지 자료의 제약상 수출가격함수와 수출수요함수를 단순화 시켜 분석을 한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수입관세율의 변화와 함께 관세환급의 수출량과 수출가격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유덕, “한-EU FTA의 협상결과 및 향후전망”, 『관세와 무역』,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 2009.8.
- 김득갑,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EU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연구」, 2005.12.
- 류시율, “관세환급제도 운영개선 방향”, 『관세와 무역』,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 2002.11.
- 박상태,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5.
- 박상태, 『관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8.
- 손황제, 「한-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농협경제연구소, 2009.
- 송선옥, “미국관세환급제도와 개정교토협약 환급관련규정의 고찰을 통한 한국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 『무역학회지』 제30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5.6.
- 신재근, 「EU 농산물의 경쟁력과 FTA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 2007.
- 외교통상부, “한-EU FTA 상세결명자료”, 2009.10.
- 외교통상부, “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7.5.6.
- 윤성덕, “한-EU FTA 협상 현황”, 『관세와 무역』,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 2008.9.
- 이종원 외 6인, 『한-EU FTA : 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높이깊이, 2007.
- 장근호·김진수,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11.
- 정인교, “한-EU FTA 경제효과와 정책과제”, 『관세와 무역』,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 2009.10.
- 정재완,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의 경제적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정재호·이명현,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12.
- 최해범, “관세환급제도의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8권 24호, 한국관세학회, 2007.12.
- KOTRA, 『한-EU FTA 수출유망 품목 및 활용방안』, KOTRA, 2009.7.29.
- KOTRA, 『한-EU FTA 체결 영향 및 현지 업계 반응조사-현지 경쟁동향 및 바이어 반응을 중심으로-』, KOTRA, 2006.
- European Commission,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A Contribution to the EU's Growth and Jobs Strategy",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s, Brussels, SEC 1230, October 4, 2006.

Jai S. Mah, "The effect of duty drawback on export promotion : The case of Korea",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18, 2007.

James Townsend, "Do tariff reductions affect the wages of workers in protected industries? Evidence from the Canada-U.S. Free Trade Agreemen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40 No.1, February, 2007.

Elena Ianchovichina, "Are duty drawbacks on export worth the Hassl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40 No.3, August, 2007.

www.mofat.go.kr

www.kita.net

www.customs.or.kr

www.fta.go.kr